

행복주택



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, 산업단지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지원대상

| | | |
|----|---------|--|
| 자격 | 고령자 | (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) |
| | 주거급여수급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※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의미함(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 신청가능) |
| | 산업단지근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주택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, 지원단지,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이하일 것 (맞벌이 부부는 120%)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,000,000원 이하 이고 총자산중 자동차가액이 35,570,000원 이하일 것 |

임대조건 및 신청절차

- 면적/임대료 전용 47㎡이하 / 시중시세의 60~80% 수준
 ※ 국토부 고시 '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'에 따르며, 평형별 차이가 있음
 ※ 2022년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)

| 구분 | 50% | 70% | 100%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인가구 | 1,606,057원 | 2,248,479원 | 3,212,113원 |
| 2인가구 | 2,422,185원 | 3,391,059원 | 4,844,370원 |

- 임대기간 6년 ~ 20년(자격요건 충족시 2년마다 재계약 체결가능), 입주자격별 임대기간 상이함.
- 신청방법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(iH, LH 홈페이지)
- 문의 iH 콜센터 (1522-0072), LH 콜센터(1600-1004)